

# 『서비스 이용약관』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2023.10.10.

현 행	개 정	비 고
제1조 ~ 제2조 (문언 생략)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이용방법 및 유의점) ① ~ ④ (문언 생략) <u>(신 설)</u>	제3조(이용방법 및 유의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사가 발행한 카드에 기록된 잔액은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카드잔액 소멸시효 명시
<u>(신 설)</u>	<b>제3조의 2(유효기간)</b> 회사가 발행한 카드는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 유효기간 명시
제4조 (문언 생략)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잔액환불, 반품, 교환 및 수수료 등) ① (문언 생략) <del>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del>  <del>③ 카드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del>  <del>④ 카드에 기록된 잔액의 환불은 부분환불이 되지 않으며, 전액환불만 가능합니다. 단, 환불 시 환불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는 이용자에게 반환하나 카드 값은 환불하지 않습니다.</del>	제5조(잔액환불, 반품, 교환 및 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카드에 충전된 잔액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시 카드는 이용자에게 반환하나 카드 구입 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③ 카드의 잔액환불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카드에 충전된 잔액의 전부를 환불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카드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환불안내 문구정비

현 행	개 정	비 고
⑤ ~ ⑫ (문언 생략)	3. 카드의 최종 충전 시점 잔액(최종 충전 후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최종 충전 시점 잔액이 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다만, 본사가 아닌 환불접수처에서 환급 시 위탁 계약에 따라 환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13조 (문언 생략)	제6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p><b>제13조의 2(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b></p> <p>① <del>회사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del></p> <p>② <del>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신탁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의 방식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del></p> <p>③ <del>회사가 선불충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대상 금액을 전액 신탁하여야 하며, 일부를 지급 준비금 용도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del></p> <p>④ <del>회사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del></p>	<p><b>제13조의 2(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b></p> <p>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 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p> <p>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O)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p> <p>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을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p>	<b>이용자 자금 보호강화</b>
제14조 ~ 제27조 (문언 생략)	제14조 ~ 제27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신 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